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08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자 : 박민규 · 김우영 · 최혁진
이기현 · 이연희 · 정준호
이주희 · 모경종 · 허 영
유동수 · 염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주택부지 부족 등으로 정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광화문·중구, 강남, 여의도 등 3대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탁월하며, 다수 지하철 노선과 근접해 있음. 여기에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함.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본체부

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호나목 개정 및 제4조제4항 신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주변산재부지”를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지역을 말한다. 가. (생략)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u>주변산재부지</u> 에 지정되는 지구 다.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u>본체</u> <u>부지 및 주변산재부지</u> ----- ----- 다.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u>

아니하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
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
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
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
령으로 정한다.